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법률 제13637호, 시행 2016. 1. 1.)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 통보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별 일몰제 적용 (안 제2,3,4,5,7,9조)

나. 일반적 추징 규정 신설 (안 제6조)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8조)

라. 최소납부세제 신설 (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6. 3. 23. ~ 2016. 4. 12)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맞게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를 간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에 대한 개별일몰제 적용, 안 제6조 일반적 추징 규정 신설, 안 제15조 최소납부세제 신설 등 기존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과 제도 개선사항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조례안입니다.

○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전부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